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 제 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4년 예산에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액이 반영됨에 따라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주업요건 중 일부 경영 면적 인정기준 정정과 중복된 종사일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주업요건 중 경영면적 인정기준 정정(안 제5조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 임업인·농업법인의 주소지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같은 시·군 이외의 연접한 시·군의 경영 면적(3만제곱미터 이상·10만제곱미터 이상) 인정기준을 산지에서 주소지 또는 사무소로 정정

* (현행) 그 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한 시·군 포함 → (개정) 그 주소지
가(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 시·군 포함

나.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상향(안 제9조제1항)

- 지급단가를 현행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

다. 육림업 직접지불금 주업대상자(100만제곱미터 이상 경영)의 경영면

적 기준 정정 및 종사일수 요건 삭제(안 제18조제1호나목)

- 주업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같은 시·군 이외의 연접한 시·군의 경영면적 인정기준을 산지에서 어느 하나의 산지로 정정

* (현행) 그 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한 시·군 포함 → (개정) 그 어느 하나의 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 시·군 포함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호의 종사일수 요건과 중복으로 규정된 연간 90일 이상 종사요건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 반영

다. 합 의 : 특이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6. ~ 4. 16.)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5조제1호가목 중 “산지가”를 “주소지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산지가”를 “사무소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20만원”을 “13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호나목 중 “산지가”를 “어느 하나의 산지가”로 하고, “경영하고, 해당 산지에서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으로서”를 “경영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인 경우	1. ----- -----
가. 임업인의 주소지와 같은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그 <u>산지</u> 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한 다른 시·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임업인	가. ----- ----- ----- ----- ----- ----- ----- ----- <u>주소지가</u> ----- ----- ----- -----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어업경	2. ----- -----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그 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한 다른 시·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농업법인

나.·다. (생략)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임가당 지급단가는 120만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18조(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인 경우

가. (생략)

나.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가. -----

----- 사무소가 -----

나.·다. (현행과 같음)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 -----

-- 130만원-----.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그 <u>산지가</u> 소재한 시·군과 연결한 다른 시·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u>경영하고, 해당 산지에서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u>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1) · 2) (생략) 2. (생략)	----- ---- <u>어느 하나의 산지가</u> ----- ----- <u>경</u> <u>영하는</u> ----- ----- ----- ----- 1) ·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임업직불제팀	
연 락 처	(042) 481-1241